로 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방향성과 방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서 개정준비 단위를 기반으로 의견수렴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조선적, 조선족, 고려인 어디에도 이 법이 알려져 있지 못해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단체,학계,법조계 정부부처간의 의사소통의 기구가 필요하며 정책적인 접근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어쨓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주한미군 학살도 새롭게 거론되고 있고 21세기 들어와서 의외로 과거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민족 해외동포의 대다수는 비자발적으로 생긴 동포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법이 차별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역사바로잡기의 차원에서라도 해외동포에게 평등한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단체가 아니라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연대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발제자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판준: 오늘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별다르게 개정운동이나 다른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훈 박사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적은 부분으로는 여론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현재 폭발단계까지 와있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원을 상담하면서 중국에 있는 한인 1세대의 대한민국 국적을 허용하면서 실제로 그 나이드신 분들이 같이 민원을 접수하러 오시는 대상자는 국내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밀입국 동포와 그리고 유학을 온 손자와 같이 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98년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발행되는 조선족 동포신문의 경우를 보자면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다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에 우리 동포사회 내에서도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역사적인 비극으로 점철되고 어쩔수 없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동포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듦에 있어 소리를 낼수 있었던 개인이나 단체는 너무 숨죽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온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회단체도 각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같이 한다면 지금의 단계를 넘어설수 있겠다라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자기 영역만 생각하고 소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실 1년간 했던 일이 없었음을 느끼고 KIN에서 워크샾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저 또한 반성을 많이 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힘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대하고 조금씩

움직인다면 힘을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28일 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단체들과 영역들이 결합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KIN의 많은 활동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KIN은 솔직히 이일을 주도하기엔 작은 단체입니다. 공동안에 대하여 개별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이 모아져서 제안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제자를 소개합니다.

서복제: 감사합니다. 한중동포 신문사 서복제입니다. 동포를 돕는 단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KIN같은 힘이 작은 단체가 집단의 요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힘이 납니다. 예전과 같이 정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 동포들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향: 재일교포 워크샾에 참석해던 김수향입니다. 발제하신 말씀을 듣고 몇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4년이 되었고 조선적의 대한 인식이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재일동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재일동포가 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북간의 항상 바뀌는 정책과 관계로 인하여 재일동포들을 지치게 하고 귀화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하더라도 재외동포법이 동포의 입장에선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호: 오늘 말씀듣고 특별히 제안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강지훈입니다. 이종훈 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혈통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람의 피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규정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종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16분의 1까지도 혈통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핏줄보다 중요한 것이 정신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입니다. 사실 흑인 유대인까지 이스라엘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4분의 1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결국 한국도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한국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을 해야 할것입니다.

질문자: 중국이 재외동포법 개정을 비공식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종훈: 사실은 지금 북한이라는 장벽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륙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호와 방송이 점차 개방됨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말투나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이 중국의 정책과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중국정부에서도 알고 있으며 인구 유입정책아니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내에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교부가 실제로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 중국에 내정간섭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 재정 전에 중국정부에 자문을 구했으며 중국정부는 당연히 자국의 이익에 맞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재외동포법에 대한 명분을 얻은 셈이며 역으로 한국정부 또한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은 셈입니다. 외교부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중국정부가 화교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이종훈: 화교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일본에서 조총련과 민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동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귀국시에 외화를 소유할 수 있는 범위를 늘인다던지 출,입국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하여 중국내로 들어오는 귀국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도 비슷합니다. 중국에 있는 동포들도 북한에 가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중국, 북한 뿐 아니라 인도의 경우도 투자관계로 인한 자율적인 혜택을 많이 줍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엔 IC 라는 말이 있습니다 INDIAN, CHINESE 의 약자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직접회로라는 말 대신에 인도 사람과 중국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신흥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한인 자본과 인력자원 유치를 위해서 참고로 해야할 점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도 해외의 동포들에게 2중 국적을 허용하는 점도 참고로 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중국인이 노벨상을 탈 경우에도 신문에는 중국인이라고 발표되지 미국인이라고 발표되지 않습니다.

이태호: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종의 감시나 모니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28일 오후 3시 해외동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워크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메 모 란

■ 메 모 란

재외동포법 공청회

재외동포법 시행 1년, 그리고 재외동포법 개정방향

▣ **주최** :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 **일시** : 2000년 11월 28일 (화) 오후 3시 - 5시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제1연수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공동대표 양영미 이태호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5호
T. (02)708-4327 F. (02)708-4328 e-mail kin@kin.or.kr 웹 www.kin.or.kr

전체 진행 및 토론 순서

○ 사 회

양 영 미 KIN 공동대표

○ 발 제

이 태 호 KIN 공동대표

이 종 훈 국회연구관, 정치학 박사

○ 토 론

윤 인 진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

김 현 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재외동포센터국장

권 영 호 한중동포신문 편집주간

'재외동포법에 관한 재외동포 의식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2000. 12.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기획사업팀

1. 조사개요

〈조사목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내용〉

○ 재외동포법의 인지도

○ 재외동포법 상 동포규정의 적정성

〈조사기간〉

2000. 7. 1. - 2000. 11. 15

〈조사방법〉

면접 및 우편발송을 통한 조사

〈조사방법의 한계〉

○ 샘플규모의 한계 : 샘플 330명은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샘플의 수에는 못 미침

○ 샘플선정의 한계 : 국적별, 거주국별, 직업별, 계층별, 연령별 통계에 기초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택하지 않고 면접 및 우편발송이 가능한 '재외동포'에 한함

〈조사대상〉

○ 미국, 일본, 중국, 독일 거주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대한민국 거주 외국국적 동포

○ 총 330명

거주지별		Frequency	%	Valid%
Valid	한국	101	30.6	31.1
	미국	61	18.5	18.8
	일본	29	8.8	8.9
	중국	88	26.7	27.1
	독일	46	13.9	14.2
	total	325	98.5	100.0
Missing		5	1.5	
Total		330	100.0	

국적별		Frequency	%	Valid%
Valid	미국	34	10.3	11.5
	일본	2	0.6	0.7
	조선적	5	1.5	1.7
	중국	182	55.1	61.3
	독일	23	7.0	7.7
	대한민국	50	15.2	16.8
	기타	1	0.3	0.3
	total	297	90.0	100.0
Missing		33	10.0	
Total		330	100.0	

이주세대별		Frequency	%	Valid%
Valid	1세	47	14.2	17.6
	1.5세	32	9.7	12.0
	2세	130	39.4	48.7
	3세	53	16.1	19.9
	기타	5	1.5	1.9
	total	267	80.9	100.0
Missing		63	19.1	
Total		330	100.0	

연령별		Frequency	%	Valid%
Valid	10대	11	3.3	3.8
	20대	58	17.6	19.8
	30대	62	18.8	21.2
	40대	84	25.5	28.7
	50대	60	18.2	20.5
	60대 이상	18	5.5	6.1
	total	293	88.8	100.0
Missing		37	11.2	
Total		330	100.0	

학력별		Frequency	%	Valid%
Valid	중졸	68	20.6	25.5
	고졸	123	37.3	46.1
	대졸	50	15.2	18.7
	대학원졸	14	4.2	5.2
	기타	12	3.6	4.5
	total	267	80.9	100.0
Missing		63	19.1	
Total		330	100.0	

성별		Frequency	%	Valid%
Valid	여자	128	38.8	45.2
	남자	155	47.0	54.8
	total	283	85.8	100
Missing		47	14.2	
Total		330	100.0	

2. 설문 분석 (I)

(1) 재외동포법에 대한 인지도

(질문1) 재외동포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Frequency	%	Valid%
Valid	안다	221	67.0	68.0
	모른다	104	31.5	32.0
	total	325	98.5	100
Missing	0	5	1.5	
Total		330	100.0	

응답자의 67%(221명)이 알고 있다고 답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중국이 100%(88명 응답), 한국 거주자가 76.3%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일본(72.4%), 미국 (36.7%), 독일 (23.9%) 순으로 인지도 편차를 보였다. 한국거주 외국국적자의 94%가 중국동포임을 감안하면 중국동포가 재외동포법 제정사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적별로도 중국 88.3%, 조선적 75.0%, 일본국적 50%, 대한민국 60%, 미국 48.5%, 독일 34.8% 순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중 동포, 재일동포(대한민국국적 취득자 제외) 사이에서 재외동포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실제 적용대상인 미국과 독일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세대별로는 2세(88.9%), 3세(88.7%)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1.5세가 71.9%, 4세이상 60%, 1세가 47.8%순의 인지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 84.5%, 30대 83.9%, 40대 73.2%로 3-50대의 연령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20대 69.0%, 60대 이상 66.7%, 10대 27.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과 노년층에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성 80.3%, 여성 70.9%로 남성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98.5%, 대학원졸 78.6%, 고졸 78.3%, 대졸 78.6%로 학력에 따른 뚜렷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중졸 학력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재중동포들의 학력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 재외동포법 동포 규정 인지도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규정 동포규정에 대해 60.3%가 안다고 응답했고 36.7%가 모른다고 대답해 상당한 인지도를 보였다.

(질문2)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나누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던 자 및 그 직계가족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대다수의 재중동포 조선족, 구소련동포 고려인, 무국적 재일동포(조선적) 및 일본국적 취득 재일동포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과거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대다수 해외동포와 그 직계가족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Frequency	%	Valid%
Valid	안다	199	60.3	62.2
	모른다	121	36.7	37.8
	total	320	97.0	100.0
Missing	0	10	3.0	
Total		330	100.0	

거주지별로는 중국 100%, 한국 62.6%, 일본 58.6%, 미국 34.4%, 독일 23.9%의 순으로 중국과 일본이 역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국적별**로도 중국 83.3%, 일본-조선적 50%, 대한민국 44.0%, 미국 38.2%, 독일 30.4% 순으로 같다.

이주세대별로는 2세 84.6%, 3세 76.9%, 1.5세 45.2%, 1세 44.7%의 인지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도 30대 82.0%, 50대 78.0%, 40대 62.3%, 20대 53.4%, 10대 27.2%의 인지도 편차를 보였다.

성별 인지도는 남성 70.5%, 여성 64.3%로 남성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학력별로 뚜렷한 편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재외동포법 적용대상 여부

(질문3) 당신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입니까?

응답자의 33.7%만이 자신이 적용대상자라고 응답했고 45.6%가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20.7%가 모르겠다고 답했으나 사실과는 매우 다른 응답이어서 재외동포법에 대한 실질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드러내고 있다.

		Frequency	%	Valid%
Valid	그렇다	111	33.6	33.7
	아니다	150	36.7	45.6
	잘 모름	68	20.6	20.7
	total	329	99.7	100.0
Missing	0	1	0.3	
Total		330	100.0	

거주지별로는 보면 우선 대다수가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자라 할 수 있는 **미국거주자** 중 36.1%만이 자신이 적용대상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63.9%가 자신은 대상자가 아니거나(31.1%) 잘 모르겠다(32.8)고 대답하여 미국 거주자들은 자신의 적용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거주자들의 34.8%만이 자신이 대상자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65.3%가 대상자가 아니거나(28.3%), 잘 모르겠다(37.0%)고 밝혀 역시 대다수가 실제적용대상자인 것과는 상반되는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요컨대 적용대상자들도 자신이 적용대상자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일본거주자는 69%가 자신이 적용대상이라고 응답했고 20.7%가 아니다, 10.3%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일본거주자 중 대상자가 많은 것은 응답자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거주자는 100%가 자신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대다수가 중국동포인 한국거주자들의 20%만이 자신이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샘플에 의하지 않은 면접조사의 한계를 염두에 둘 때, 중국현지 조사대상자들이 사전 인지도가 높은 조직화된 집단임을 추측케 한다. 대다수가 중국국적자인 한국거주 외국국적자(조사대상 101명 중 94명이 중국국적자)의 52%는 자신이 적용대상자라고 응답하고 있어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세대별, 연령별, 성별로는 주목할만한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생의 100%(14명)가 자신이 적용대상이라고 대답했고, 대졸자의 38%(19명), 고졸자의 33.6%(41명), 중졸자의 16.2%가 적용대상자라고 응답했다. 반면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응답에는 중졸 75.0%(51명), 고졸 48.4%(22명), 대졸 28.0%(14명)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학력자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추측을 해볼만하다.

(4) 재외동포 규정의 적정성 판단

(질문4)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를 위와 같이 정의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12%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적절 5.2%, 적절하다 6.8%), **응답자의 72.3%가 부당하다고 생각(부당 17.2%, 매우 부당 55.1%)하고 있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7%로 나타났다.

		Frequency	%	Valid%
Valid	매우 적절	17	5.2	5.2
	적절	22	6.7	6.8
	부당	56	17.0	17.2
	매우 부당	179	54.2	55.1
	잘 모름	51	15.5	15.7
	total	325	98.5	100.0
Missing	0	5	1.5	
Total		330	100.0	

거주지별로는 '적절하거나 매우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중국 1.1%, 독일2.2%, 일본 3.4%, 미국 11.7%, 한국 29.9%로 나타났고, '부당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중국 98.9%, 독일 80.4%, 일본 79.3%, 미국 56.7%, 한국 50.5%로 나타났다. 미국 거주자들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주목할만하다. 미국 응답자들 중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1.7%로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중국 76%, 독일 73.9%, 미국 67.7%, 대한민국 6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세대별로는 1세 62.2%, 1.5세 64.5%, 2세 78.9%, 3세 82.7% 순으로 나타나 2세 3세로 갈수록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대 54.6%, 20대 81%, 30대 80.4%, 40대 65.4%, 50대 79.7%, 60대 이상 50% 등 10대와 60대 이상 층에서 부당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았다. 10대의 36.4%, 60대 이상의 27.8%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학력별로는 중졸 80.6%, 고졸 71%, 대졸 69.4%, 대학원졸 7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편차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5) 재외동포 규정의 차별성 여부

(질문5) 위와 같은 재외동포법의 동포규정이 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86.4%가 차별적(매우차별적 63.7%, 차별적 22.7%)이라고 응답했다. 차별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0%)에 지나지 않았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9.6%로 나타났다.

		Frequency	%	Valid%
Valid	매우 차별	205	62.1	63.7
	차별	73	22.1	22.7
	별로 차별안함	13	3.9	4.0
	전혀 차별안함	0	0	0
	잘 모름	31	9.4	9.6
	total	322	97.6	100.0
Missing 0		8	2.4	
Total		330	100.0	

거주지별로는 차별적이라는 응답은 중국 100%, 한국 85.2%, 독일 84.8%, 일본82.2%, 미국 70.5% 순으로 나타났고, 차별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미국 13.1%, 한국 4.3%, 일본 3.6% 순으로 나타나 미국거주자들 중 차별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적별로는 차별적이라는 응답자가 중국 93.1%, 독일 78.3%, 대한민국 77.5%, 미국 70.6%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63.7%, 20대 88%, 30대 88.4%, 40대 90.1%, 50대, 88.2%, 60대이상 83.3%로 10대들이 차별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이주세대별**로는 1세 68.1%, 1.5세 87.6%, 2세 93.5%, 3세 92.3%, 기타 80%로 1세들이 비교적 차별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중졸 97.1%, 고졸 86.5%, 대졸 77.5%, 대학원졸 84.6%로 나타났다. **성별** 편차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6) 혈통주의로 개념확대의 필요성

(질문6)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이들도 재외동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을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였던 자"에서 "한민족 혈통의 외국국적자와 그 직계가족(혈통주의)"으로 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3.0%가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개념을 혈통주의로 바꾸는데 적극 찬성했다.

		Frequency	%	Valid%
Valid	매우 찬성	210	63.6	64.8
	찬성	59	17.9	18.2
	반대	14	4.2	4.3
	매우 반대	10	3.0	3.1
	잘 모름	31	9.4	9.6
	total	324	98.2	100.0
Missing 0		6	1.8	
Total		330	100.0	

거주지별로는 중국 95.4%, 독일 91.1%, 한국 81.4%, 일본 72.4%, 미국 66.6%의 순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반대는 미국 20%, 일본 10.3%, 중국 4.5%, 독일 4.4%, 한국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다.

연령별로는 찬성의 비율이 60대 이상 94.1%, 50대 90.0%, 40대 80.5%, 30대 82.3%, 20대 80.7%, 10대 63.7%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혈통주의에 대한 찬성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세대별로는 1세 63%, 1.5세 81.3%, 2세 91.4%, 3세 77.4%, 기타 80%로 나타나 1.5세-2세가 가장 찬성율이 높고 1세와 3세에서 찬성율이 낮아지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92.7%, 고졸 78.3%, 대졸 77.5%, 대학원졸 88.6%로 나타났다. **성별** 편차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7)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견해

(질문7) 외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혈통주의적 재외동포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혈통주의에 따라 화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모든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도록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81.6%,
강대국의 횡포이지만 힘이 약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2.8%,
조선족 동포 유입은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이므로 설득력이 있다는 응답이 9.5%,
중국도 화교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0.9%,
기타 5.1%로 나타났다.

		Frequency	%	Valid%
Valid	어쩔 수 없다.	9	2.7	2.8
	중국이 반대해도 추진해야	258	78.2	81.6
	나름대로 설득력 있다.	30	9.1	9.5
	중국도 화교정책 중단해야	3	0.9	0.9
	기타	16	4.8	5.1
	total	316	95.8	100.0
Missing	0	14	4.2	
Total		330	100.0	

거주국별로는 중국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비율이 독일 97.7%, 중국 96.6%, 한국 80.2%, 미국 66.1%, 일본 4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중국 거주자들에게서 높은 비율의 응답이 나온 반면, 미국과 일본의 응답율은 낮다.

국적별로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야한다는 견해가 독일 100%, 중국 89%, 미국 75%, 대한민국 58%순이다. 조선족 유입의 우려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진다는 견해를 피력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22%로 평균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국적 재외동포가 주로 재일동포라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하다. 거주국별 분석에서도 재일동포들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야한다는 견해에 부정적인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독일과 미국에 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인 심한 일본사회의 현실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도 해봄직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70%, 20대가 70.7%, 30대가 91.4%, 40대가 82.5%, 50대가 86.7%, 60대 이상이 82.4% 등으로 10대, 20대에서 외교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세대별 편차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학력별로는 중졸 88.2%, 고졸 85.1%, 대졸 75.5%, 대학원졸 46.2%. 학력이 높을수록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졸업자의 경우 15.1%가 어쩔 수 없다, 23.1%가 기타 란에 표시했다. **성별**편차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8)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허용 여부

(질문8) 재일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동포들은 조석적(무국적)으로 표기되어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85.1%, 반대 4.6%, 잘 모르겠다 10.4%

		Frequency	%	Valid%
Valid	찬성	279	84.5	85.1
	반대	15	4.5	4.6
	잘 모름	34	10.3	10.4
	total	328	99.4	100.0
Missing	0	2	0.6	
Total		330	100.0	

거주국별 찬성비율은 독일 100%, 중국 96.6%, 일본 86.2%, 한국 75.8%, 미국 7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찬성비율은 독일 100%, 중국 86.6%, 대한민국 79.6%, 미국 73.5%, 조선적 60%, 일본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조선적과 일본국적 동포들의 찬성비율이 낮은 것은 조선적의 자유왕래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곤란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적 재일동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조총련은 조선적 동포들의 남한 자유왕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주세대별 찬성비율은 1세가 72.3%, 1.5세가 87.5%, 2세가 88.4%, 3세가 80.0%로 이주 1세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주 1세대가 이념적인 문제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연령별 찬성비율은 10대가 90.9%, 20대가 87.7%, 30대가 82.3%, 40대가 80.7%, 50대가 91.7%, 60대 이상이 83.3%로 전반적으로 찬성비율이 높은 가운데서도 3-40대가 비교적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질문과는 달리 3-40대의 찬성비율이 낮은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학력별 찬성률은 중졸 95.6%, 고졸 77.9%, 대졸 83.7%, 대학원졸 92.9%로 중졸학력자를 제외하고는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높다. 중졸자 중 찬성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민족적 성향이 강한 중국동포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9) 조선족 대거 유입에 대하여

(질문9) 재외동포법이 재중동포에게도 적용될 경우, 재중동포(조선족)들의 대거 유입이 우려되므로 재외동포법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requency	%	Valid%
Valid	우려 당연	18	5.5	5.7
	고른 혜택부여	182	55.2	57.8
	조절장치 마련	103	31.2	32.7
	법 폐기 후 예전체제로	3	0.9	1.0
	기타	9	2.7	2.9
	total	315	95.5	100.0
Missing 0		15	4.5	
Total		330	100.0	

응답자 중 90.5%가 재외동포법에 재중동포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재중동포들의 대거유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거나 별도의 조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적 동포들의 대거유입은 한국경제, 한중관계에 큰 문제이므로 당연하다 5.7%,
조선족 동포들이 대거유입되더라도 동포들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57.8%,
법은 모든 동포들이 포함되도록 제정하되 법외의 대거유입 조절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32.7%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예전체제를 유지하는 편이 낫겠다 1.0%.
기타 2.9%

거주국별로는 '대거유입에도 불구하고 고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중국 95.4%, 한국 47.8%, 미국 43.3%, 독일 38.6%, 일본 34.5%로 중국거주자와 다른 나라 거주자간에 커다

란 인식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법적용대상은 모든 동포를 포함시키되 조절장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는 독일 61.4%, 미국 41.7%, 일본 41.4%, 한국 38.9%, 중국 3.4% 등 역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대거유입에도 불구하고 고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중국 71.9%, 독일 42.9%, 대한민국 42.0%, 미국 36.4% 순으로 중국국적자와 다른 국적자의 인식 차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중국국적자의 응답비율(71.9%)이 중국거주자(95.4%)의 응답비율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한국에 있는 중국동포와 중국에 있는 중국동포의 인식격차를 보여줘 흥미롭다.

연령별로는 '고른 혜택부여'가 10대 27.3%, 20대 56.9%, 30대 58.6%, 40대 56.3%, 50대 71.7%, 60대 58.8%로 연령이 높을수록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절장치 필요'는 10대 45.5%, 20대 34.5%, 30대 34.5%, 40대 32.5%, 50대 18.3%, 60대이상 29.4%로 역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평등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있어서는 편차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주세대별로는 '고른 혜택부여'의 비율이 1세 53.3%, 1.5세 44.8%, 2세 70.2%, 3세 60.4%로 1세, 1.5세에 비해 2세, 3세의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다. 법은 평등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편차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른 혜택부여'가 중졸 86.6%, 고졸 59.6%, 대졸 38.8%, 대학원졸 42.9%, '조절장치 모색'이 중졸 7.5%, 고졸 28.9%, 대졸 46.9%, 대학원졸 42.9%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조절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져 "고른혜택'지지와 대등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고른혜택'이 여성 66.1%, 남성 55.3%로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 외국인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견해

(질문10) 재외동포법이 제정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인들의 출입국이나 법적 지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찬성하는 입장이 51.8%로 과반수에 이르고 있으나 반대하는 입장 (32.9%)과 잘 모르겠다 (15.2%)는 입장도 적지 않다.

매우찬성 30.7%, 찬성 21.1%, 반대 23.3%, 매우반대 9.6%, 잘 모르겠다 15.2%

		Frequency	%	Valid%
Valid	매우 찬성	99	30.0	30.7
	찬성	68	20.6	21.1
	반대	75	22.7	23.3
	매우 반대	31	9.4	9.6
	잘 모름	49	14.8	15.2
	total	322	97.6	100.0
Missing 0		8	2.4	
Total		330	100.0	

거주국별 찬성율은 일본89.3%, 독일 79.5%, 미국 67.2%, 한국 61.5%, 중국 5.7%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찬성률이 극단적으로 낮은 것은 주목할만하다. 중국동포들이 자신과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성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율 역시 극단적 편차를 보여준다. 중국 89.8%(매우 반대 19.3%), 한국 15.6%(매우반대 7.3%), 독일 9.1%(매우 반대 6.8%), 미국 6.6% (매우반대 3.3%), 일본 3.6%(매우 반대 0%).

국적별 찬성율은 대한민국 78%, 독일 71.4%, 미국 64.7%, 중국 32% 순이다. 중국국적자의 찬성율이 거주국별 찬성율에 비해 현격히 높아진 것은 중국국적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국거주 중국동포'의 높은 찬성율(약 65%로 추정)에 기인한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한국거주 응답자의 94%가 중국국적자이다. 이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에 대한 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 변화의 원인이라 추정된다.

이주세대별, **연령별**, **성별** 응답에는 뚜렷한 편차나 경향을 찾을 수 없다.

학력별 찬성율은 중졸 22.8%, 고졸 33.7%, 대졸 68%, 대학원졸 8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11) 선거권에 대한 견해

(질문11)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는 입장이 69.5%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불필요(15.1%), 잘 모름(15.4%)

		Frequency	%	Valid%
Valid	필요	221	67.0	69.5
	불필요	48	14.5	15.1
	잘 모름	49	14.8	15.4
	total	318	96.4	100.0
Missing 0		12	3.6	
Total		330	100.0	

거주국별 찬성율은 중국 98.9%, 독일 93.3%, 한국 59.1%, 일본 48.3%, 미국 3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독일 거주자들의 찬성율이 현저하게 높다. 반대율은 미국 44.8%, 일본 24.1%, 한국 11.8%, 독일 6.7%, 중국 0% 순이다. 미국의 경우, 찬성률보다 반대율이 높다.

국적별 찬성율은 독일 86.4%, 중국 80.7%, 대한민국 42.9%, 미국 25.8% 순으로 나라별 편차가 크다. '불필요 또는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미국 74.2%(불필요 38.7%), 대한민국 57.2%(불필요38.8%), 중국 19.4%(불필요 13.1%), 독일 13.6%(불필요 13.6%) 순이다.

연령별 찬성율은 10대 54.5%, 20대 56.1%, 30대 68.3%, 40대 71.8%, 50대 81.4%, 60대 이상 70.6%로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권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세대별 찬성률은 1세 48.8%, 1.5세 43.2%, 2세 80.0%, 3세 66.7%로 2세와 3세에서 요구가 강했다.

학력별 찬성율은 중졸 89.6%, 고졸 71.3%, 대졸 37.5%, 대학원졸 3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선거권 부여에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 혹은 모르겠다' 응답의 경우, 대학원졸 64.3%(불필요 25%), 대졸 62.5%(불필요 39.6%), 고졸 28.7%(불필요 13.0%), 중졸 10.5%(불필요 4.5%). **성별** 편차는 없었다.

3. 설문 분석 (II)

○ 설문분석 II는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자의 법 적용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 전체 응답자 중 재외동포법 발효 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재외동포법 대상자 총 37명에 대한 조사결과이다.(질문 12)

○ 전체 응답자 중 미국 국적자가 14명, 독일 국적자는 5명, 한국국적자는 18명(한국국적 재일동포를 포함한 재외국민)이었다.

○ 표본 수의 제한으로 국적별, 연령별, 이주세대별, 학력별, 성별 교차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1) 출입국 절차에 대한 만족도

(질문13) '재외동포법' 발효 이후 "출입국 절차"가 개선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응답자 36명 중 3명(8.3%)이 개선된 편이거나 혹은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33명(91.7%)이 별 개선이 없거나(52.8%) 잘 모르겠다(38.9%)고 응답했다. 더 악화되었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Frequency	%	Valid%
Valid	확실히 개선	1	2.7	2.8
	개선된 편	2	5.4	5.5
	별 개선없음	19	51.4	52.8
	더 악화	0	0	0
	잘 모름	14	37.8	38.9
	total	36	97.3	100.0
Missing	0	1	2.7	
Total		37	100.0	

(2) 취업 · 의료보장 등에 대한 만족도

(질문14) '재외동포법' 발효 이후 '취업, 재산취득, 의료보장' 등이 개선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응답자 36명 중 2명(5.6%)만이 개선된 편이거나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2명 (94.4%)가 별 개선이 없거나(33.3%) 잘 모르겠다(61.1%)고 응답했다. 더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없었다.

		Frequency	%	Valid%
Valid	확실히 개선	2	5.4	5.6
	개선된 편	0	0	0
	별 개선없음	12	32.4	33.3
	더 악화	0	0	0
	잘 모름	22	59.5	61.1
	total	36	97.3	100.0
Missing	0	1	2.7	
Total		37	100.0	

(3) 거소신고제도에 대한 만족도

(질문15) '재외동포법' 제정 이후 새로 도입된 '거소신고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36명 중 1명(2.8%)만이 아주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별 개선이 없다고 느낀 사람이 6명 (16.7%),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5명(69.4%),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4명(11.1%)였다.

		Frequency	%	Valid%
Valid	아주 편리	1	2.7	2.8
	편리한 편	0	0	0
	개선 없음	6	16.2	16.7
	매우 불편	4	10.8	11.1
	잘 모름	25	67.6	69.4
	total	36	97.3	100.0
Missing 0		1	2.7	
Total		37	100.0	

4. 종합분석

(1) 설문 I 결과 종합

재외동포법 제정 및 시행사실,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규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각각 67%, 60.3%가 안다고 응답했으나 자신이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는 미국거주자나 독일 거주자으 60% 이상이 자신이 대상자인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등 실질적인 인지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의 동포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3%가 부당하다고 생각(부당 17.2%, 매우 부당 55.1%)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86.4%가 차별적(매우차별적 63.7%, 차별적 22.7%)이라고 응답했으며 83.0%가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개념을 혈통주의로 바꾸는데 적극 찬성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미국국적자 또는 미국거주 재외동포들 중적절하며 차별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응답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재외동포법이 주로 미국거주 동포들을 염두에 두고 성안되었다는 점을 되새겨봄직하다.

중국이 반대와 관련,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모든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도록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81.6%, 조선족의 대거유입 등의 우려를 이유로 재외동포법에서 중국동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90.5%가 반대했다. 단 재중동포의 대거유입을 조절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도 32.7%가 나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조선적(무국적 재일동포) 입국 허용에도 85.1%가 찬성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출입국 권리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입장이 51.8%로

과반수에 이르고 있으나 반대하는 입장 (32.9%)과 잘 모르겠다(15.2%)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다른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및 법적 지위의 개선에 대해 보다 배타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에 찬성하는 입장이 69.5%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주로 재중동포, 재독동포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문II 결과 종합

매우 제한적인 범위 (36명) 내에서 조사한 결과이지만,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대다수가 출입국 절차, 의료보장 및 취업 등과 관련한 특례조치, 거소신고 제도 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외동포법상의 특례조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 (52.8~69.4%)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신문

재외동포법 적용배제 조선족 반발

공대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단식농성

Survey of the Awareness of the Overseas Koreans on the Overseas Koreans Act

Analysis Report

December, 2000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

1. Summary of the Survey

〈Objectives〉

To survey the degree of awareness and satisfaction amongst overseas Koreans concerning the Act regarding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hereafter Overseas Koreans Act) and to seek a positive direction for its improvement.

〈Content of the Survey〉

○ Awareness on the Overseas Koreans Act

○ Appropriateness of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by the Overseas Koreans Act

〈Duration of the Survey〉

2000. 7. 1. - 2000. 11. 15

〈Survey Method〉

Interview and/or mail correspondence

〈Limitations of the Survey Method〉

○ Limitation of the Sample Size : The sample size(330 respondents) is not enough for an objective analysis

○ Limitation of the Sampling Selection : The survey was not through the random sampling based on statistic data by nationality, residential country, occupation, status, age. etc. Sampling selection was strictly limited to those 'overseas Koreans' who could be approached by interviews or mails.

〈Survey Subject〉

○ Overseas Koreans and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ies who reside in the US, Japan, China, Germany and South Korea

○ A total of 330 people

Residency		Frequency	%	Valid%
Valid	South Korea	101	30.6	31.1
	US	61	18.5	18.8
	Japan	29	8.8	8.9
	China	88	26.7	27.1
	Germany	46	13.9	14.2
	total	325	98.5	100.0
Missing		5	1.5	
Total		330	100.0	

Nationality		Frequency	%	Valid%
Valid	US	34	10.3	11.5
	Japan	2	0.6	0.7
	Joseon-jeok	5	1.5	1.7
	China	182	55.1	61.3
	Germany	23	7.0	7.7
	ROK	50	15.2	16.8
	Others	1	0.3	0.3
	total	297	90.0	100.0
Missing		33	10.0	
Total		330	100.0	

Immigrant Generation		Frequency	%	Valid%
Valid	1	47	14.2	17.6
	1.5	32	9.7	12.0
	2	130	39.4	48.7
	3	53	16.1	19.9
	Others	5	1.5	1.9
	total	267	80.9	100.0
Missing		63	19.1	
Total		330	100.0	

Age		Frequency	%	Valid%
Valid	10s	11	3.3	3.8
	20s	58	17.6	19.8
	30s	62	18.8	21.2
	40s	84	25.5	28.7
	50s	60	18.2	20.5
	60s and over	18	5.5	6.1
	total	293	88.8	100.0
Missing		37	11.2	
Total		330	100.0	

Education		Frequency	%	Valid%
Valid	Middle	68	20.6	25.5
	High	123	37.3	46.1
	College	50	15.2	18.7
	Graduate	14	4.2	5.2
	Others	12	3.6	4.5
	total	267	80.9	100.0
Missing		63	19.1	
Total		330	100.0	

Sex		Frequency	%	Valid%
Valid	Female	128	38.8	45.2
	Male	155	47.0	54.8
	total	283	85.8	100
Missing		47	14.2	
Total		330	100.0	

2. Analysis of the Survey (I)

(1) Awareness of the Overseas Koreans Act

(Q 1) Are you aware of the fact that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enacted and has been in force (since December 3, 1999) in the Republic of Korea?

		Frequency	%	Valid%
Valid	Yes	221	67.0	68.0
	No	104	31.5	32.0
	total	325	98.5	100
Missing	0	5	1.5	
Total		330	100.0	

67.2%(221 people)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knew it, and they showed the high degree of awareness.

By residency, 100%(88) in China, 76.3% in Korea, showed the high degree of awareness, and 72.4% in Japan, 36.7% in America, 23.9% in Germany respectively. Considered that the 94% of the foreign nationalities in Korea are Chinese, it is concluded that Overseas Korean Chinese know about this Act better than the others.

By nationality, 88.3% in China, 75.0% Chosun-juks , 50% in Japan , 60% in Korea, 48.5% in America, 34.8% in Germany had awareness of it. It means that the overseas Koreans in Japan and China, to whom this Act would not be applied, had more awareness than ones in America and Germany.

By immigrant generations, the second generations 88.9%, the third generations 88.7%, had the most awareness, while the 1.5 generations 71.9%, the fourth or above generations 71.9%, the first generations 47.8%.

By age, people in their fifties 84.5%, thirties 83.9%, forties 73.2%, twenties 69.0%, sixties and over 66.7%, teens 27.3% had awareness of it. It is found that the young and old had

lower awareness of it.

By sex, men 80.3%, women 70.9% had awareness of it. Men had a slightly more awareness of it.

By education, middle school 98.5%, graduate school 78.6%, high school 78.3%, under graduate school 78.6% had awareness of it. Any specific tendency is not found here. The high degree of awareness of middle school graduates is supposed to be due to the low average standard of education of the Overseas Korean Chinese.

(2) Awareness of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Q 2) Are you aware of the fact that according to the Overseas Koreans Act, Overseas Koreans are distinguished as Overseas Korean and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the latter term including those who once had ROK nationality and those who are family members of such a person and have acquired foreign nationality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and of the fact that Joseon-jok Koreans in China (Korean Chinese), Koryo-in Koreans in Russia (Korean Russians), Joseon-jeok Koreans in Japan with no nationality, Koreans in Japan who have acquired Japanese nationality, and others who previously emigrated to other countrie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government and did not acquire ROK nationality, which includes the great majority of overseas Korean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in fact exclud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law and its benefits?

		Frequency	%	Valid%
Valid	Yes	199	60.3	62.2
	No	121	36.7	37.8
	total	320	97.0	100.0
Missing	0	10	3.0	
Total		330	100.0	

By residency, China 100%, Korea 62..6%, Japan 58.6%, America 34.4%, German 23.9% was aware of it. As expected, China and Japan showed high degree of awareness.

By nationality, China 83.3%, Chosun-Juk and Japan 50%, Korea 44.0%, America 38.2%, German 30.4% had awareness of it.

By immigrant generations, second generations 84.6%, third generations 76.9%, 1.5 generations 45.2%, first generations 44.7% had awareness of it. By age, thirties 82.0%, fifties 78.0%, forties 62.3%, twenties 53.4%, teens 27.2% had awareness of it. High deviation in awareness is found here.

By sex men 70.5%, women 64.3% had awareness of it. By education, there could not be found any specific tendency.

(3) Application of the Act

(Q 3) Does the OKA apply to you?

		Frequency	%	Valid%
Valid	Yes	111	33.6	33.7
	No	150	36.7	45.6
	Not Sure	68	20.6	20.7
	total	329	99.7	100.0
Missing	0	1	0.3	
Total		330	100.0	

By residency, first it is found that among the Overseas Koreans in America, most of whom are appliers, only 36.1% knew they were appliers and 63.9% said that they were not(31.1%), or they didn't know(32.8%). This revealed that even Overseas Koreans in America didn't have accurate knowledge of their application status. Also, only 34.8% of the German residents said that they were appliers and 65.3% said they were not appliers(28.3%) or they didn't know(37.0%). This is similar phenomenon to overseas Koreans in America.

69% of Japan residents replied that they were appliers and 20.7% were not, 10.3% didn't know. The reason why they were many appliers among Japan residents is probably that among respondents there were also many people with the Korean nationality.

100% of the China residents said that they were not appliers, which was sharply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Chinese in Korea (20% said that they were not appliers). In this respect, it is assumed that the China residents were a highly organized group. Meanwhile, 52% of the Korean Chinese in Korea(94 in 101 had China nationalities) said that they were appliers. This shows that they didn't have accurate knowledge of their application status.

By generations, ages, sex, any remarkable tendency is not found.

By education, college 100%(14), graduate 38%(19), high school 33.6%(41), middle school 28.0%(14) said that they were appliers. However, middle school 75.0%(51), high school 48.4%(22), graduate school 28.0%(14) said that they were not appliers. This suggest that people with lower education had a tendency to be excluded in this Act.

(4) Appropriateness of the Definition

(Q 4) Do you think the passage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bove is adequate for defining what an Overseas Korean is in a fair manner?

		Frequency	%	Valid%
Valid	Very Much	17	5.2	5.2
	Appropriate	22	6.7	6.8
	Not	56	17.0	17.2
	Very Much Not	179	54.2	55.1
	Not Sure	51	15.5	15.7
	total	325	98.5	100.0
Missing	0	5	1.5	
Total		330	100.0	

12%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is law is appropriate(very much 5.2%, appropriate 6.8%), and 72.3% said that it is not appropriate(very much not 55.1%, not 17.2%). 15.7% said that they were not sure.

By residency, China 1.1%, German 2.2%, Japan 3.4%, America 11.7%, Korea 29.9% replied that it was appropriate. China 98.9%, German 80.4%, Japan 79.3%, America 56.7%, Korea 50.5% replied that it was not appropriate. It is remarkable that the percentage of the Korean Americans in America, who replied that it was appropriate,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e others. 31.7% of the Korean Americans in America, who replied that they didn't know, which is above average.

By nationality, China 76%, German 73.9%, America 67.7%, Korea 61.2% answered that this was not appropriate.

By Immigrant generations, 62.2% of first generations, 64.5% of 1.5-th generations, 78.9% of second generations, 82.7% of third generations replied that it was not appropriate, which showed that the newer generations were more likely to consider that it was not appropriate.

By age, teens 54.6%, twenties 81%, thirties 80.4%, forties 65.4%, fifties 79.7%, sixties or above 27.8% replied that it was not appropriate, while the percentage of teens and sixties or above much lower than the others. 36.4% of teens, 27.8% of sixties or above said that they didn't know.

By education, middle school 80.6%, high school 71%, college 69.4%, graduate school 78.5% considered that this law is not appropriate.

By sex, there were not found any specific distinctions.

(5) Discriminatory Definition

(Q 5) Do you think that the abov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in the Overseas Koreans Act discriminates against Overseas Koreans?

		Frequency	%	Valid%
Valid	Very Much	205	62.1	63.7
	Discriminatory	73	22.1	22.7
	Not much	13	3.9	4.0
	Not discriminatory	0	0	0
	Not Sure	31	9.4	9.6
	total	322	97.6	100.0
Missing	0	8	2.4	
Total		330	100.0	

86.4%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definition was discriminatory(very much 63.7%, discriminatory 22.7%). Only 4%(Not much 4%) answered that it was not discriminatory. 9.6% said they were not sure.

By residency, 100% of China, 85.2% of Korea, 84.8% of German, 82.2% of Japan, 70.5% of America agreed that it was discriminatory. 13.1% of America, 4.3% of Korea, 3.6% of Japan thought that it was not discriminatory. We can see that the Korean Americans in America thinks that it is not discriminatory than the others.

By nationality, China 93.1%, Germany 78.3%, Korea 77.5%, America 70.6% answered that the definition is discriminatory.

By age, 63.7% of teens, 88% of twenties, 88.4% of thirties, 90.1% of forties, 88.2% of fifties, 83.3% of sixties or more thought that the definition is discriminatory. The percentage of the teens, who answered "discriminatory" is relatively low. By immigration generations, 68.1% of the first generations, 87.6% of the 1.5 generations, 92.3% of the third generations, 80% of the others said that the definition is discriminatory.

By education, middle school 97.1%, high school 86.5%, college 77.5%, graduate school 84.6% agreed that it is discriminatory . By sex, there was no specific distinction here.

(6) Hereditary Principle

(Q 6)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uggestion that in order for those who emigrated from Kore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to be considered as Overseas Koreans, the Overseas Koreans Act must be amended from "those who held ROK nationality in the past" to "those possessing foreign nationality who are of Korean ethnicity and descent and those who are family members of such people (hereditary principle)?

		Frequency	%	Valid%
Valid	Very Much	210	63.6	64.8
	Yes	59	17.9	18.2
	No	14	4.2	4.3
	Very Much	10	3.0	3.1
	Not Sure	31	9.4	9.6
	total	324	98.2	100.0
Missing	0	6	1.8	
Total		330	100.0	

83.0% of the respondents, agreed on the suggestion that it should be changed into the hereditary principle.

By residency, 95.4% in China, 91.1% in German, 81.4% in Korea, 72.4% in Japan, 66.6% in America agreed, and 20% in America, 10.3% in Japan, 4.5% in China, 4.4% in German, 2.1% in Korea disagreed. By nationality, similar tendency to this.

By age, 94.1% of sixties or more, 90.0% of fifties, 80.5% of forties, 82.3% of thirties, 80.7% of twenties, 63.7% of teens agreed on the suggestion. We could see that the younger are less likely to support the suggestion.

By immigrant generations, 63% of the first generation, 81.3% of the 1.5 generation, 91.4% of the second generation, 77.4% of the third generation, 80% of the others agreed. The percentage of the 1.5 and the second generations, who agreed to it, was relatively higher.

By education, middle school 92.7%, high school 78.3%, college 77.5%, graduate 88.6%, agreed. By sex, there was no specific distinction here.

(7) Diplomatic tension with China

(Q 7)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ays that it is difficult to amend the law because China would be against ROK's Overseas Korean policy based on the hereditary principle. Do you think this is reasonable?

		Frequency	%	Valid%
Valid	Cannot help	9	2.7	2.8
	Change despite opposition	258	78.2	81.6
	Opposition is reasonable	30	9.1	9.5
	China must stop its policy	3	0.9	0.9
	Others	16	4.8	5.1
	total	316	95.8	100.0
Missing	0	14	4.2	
Total		330	100.0	

81.6%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despite the China's opposition, it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the whole Overseas Koreans around the world. 2.8% replied that owing to the logic of power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we didn't have any alternative to this. 9.5% replied that it is reasonable because the mass influx of Chosun-joks may give a rise to a serious problem in both countries. 0.9% replied that the China should abandon its hereditary policy to the Overseas Chinese around the world. The others 5.1%.

By residency, German 97.7%, China 96.6%, Korea 80.2%, America 66.1%, Japan 48.3% answered that despite the China's opposition, it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the whole Overseas Koreans around the world. The Overseas Korean residents in China, who were directly concerned with this dispute, gave much support to the revision of the law.

By nationality, German 100%, China 89%, America 75%, Korea 58% answered that despite the China's opposition, it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the whole Overseas Koreans around the world. It is because Overseas Koreans with Korean nationality reside mostly in Japan that the people with Korean nationality, who thought that the anxiety about the mass influx of Chosun-joks had persuasive power, made up 22% over the

average. By residency, the Overseas Koreans in Japan, who took the negative view of the revision, were relatively more than the others. It seems to be connected with the fact that the discrimination on foreign laborers in Japan were more severe than in America and Germany.

By age, 70% of teens, 70.7% of twenties, 91.4% of thirties, 82.5% of forties, 86.7% of fifties, 82.4% of sixties or more supported to the revision of the Act, which suggested that the younger people gave more thought to the diplomatic problem. By immigrant generations, there was not any specific distinction.

By education, middle school 88.2%, high school 85.1%, college 75.5%, graduate 46.2% supported to the revision, which showed that the older took more considerate position on the issue. By sex, there was not any specific distinction.

(8) Allowing the Entry of Chosun-Juk Koreans in Japan

(Q 8) Koreans in Japan who do not possess neither ROK nor Japanese nationality and are declared to be Chosun-Juk (no nationality), are suffering under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Also, they are under restrictions when entering the ROK. What is your opinion on allowing Chosun-Juk Koreans in Japan to enter the ROK?

		Frequency	%	Valid%
Valid	Yes	279	84.5	85.1
	No	15	4.5	4.6
	Not Sure	34	10.3	10.4
	total	328	99.4	100.0
Missing	0	2	0.6	
Total		330	100.0	

85.1% agreed, 4.6% disagreed, 10.4% said that they didn't know

By residency, German 100%, China 86.6%, Japan 86.2%, Korea 75.8%, America 70.5%

agreed.

By nationality, German 100%, China 86.6%, Korea 79.6%, America 73.5%, Chosun-Juk 60%, Japan 50% agreed. It seems that they didn't give much support to that because Chosun-Juk and Japan were concerned about the relation with North Korea. It is known that the Chong-Ryun group, who had kept close connection with Chosun-Juk people, actually took the negative point of view about 'the Free Entry to ROK' of Chosun-Juk people.

By immigrant generation, the first generation 72.3%, the 1.5 generation 87.5%, the second generation 88.4%, the third generation 80.0% agreed. It is suggested that the First generation are more concerned about ideological questions.

By age, 90.9% of teens, 87.7% of twenties, 82.3% of thirties, 80.7% of forties, 91.7% of fifties, 83.3% of sixties or more agreed. It is remarkable that unlike the other questions, the people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were more discreet on this question.

By education, middle school 95.6%, high school 77.9%, college 83.7%, graduate 92.9% agreed, which revealed that the people with higher education were more likely to agree. By sex, there was not any specific distinction.

(9) Mass Influx of Chosun-jok

(Q 9)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act that some people have the opinion that the Overseas Koreans Act cannot be made to include Korean Chinese because they are afraid that it would lead to a large scale influx of Chosun-jok Korean Chinese?

		Frequency	%	Valid%
Valid	Concerned	18	5.5	5.7
	Equal Treatment	182	55.2	57.8
	Control Mechanism	103	31.2	32.7
	Old System	3	0.9	1.0
	기타	9	2.7	2.9
	total	315	95.5	100.0
Missing	0	15	4.5	
Total		330	100.0	

90.5%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the Overseas Korean Chinese into the defini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nd the forth-coming problems should be solved in a other way(adjustment mechanism).

5.7% replied that it is appropriate because the influx of Chosun-joks would have a great impact on Korea economy and the interrelation with China.
57.8% replied that same rights should be given to all Chosun-joks despite the possiblity of their mass influx.
32.7% replied that the Act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all the Overseas Koreans around the world, and the problem of mass influx of Chosun-joks should be solved in another way.
1.0% replied that the Overseas Korean Act should be abolished and the previous system remained.
The others 2.9%

By residency, China 71.9%, Korea 47.8%, America 43.3%, German 38.6%, Japan 34.5% agreed to the opinion that the same rights should be given to all despite the mass influx of Chosun-jok. There is a great difference of views between the Overseas Koreans in China and the Others in other countries. German 61.4%, America 41.7%, Japan 41.4%, Korea 38.9%, China 3.4% said that the Act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all the Overseas Koreans around the world, and there shoud be adjustment policies.

By nationality, China 31.7%, German 42.9%, Korea 42.0%, America 36.4% said that the same rights should be given to all in-coming Chosun-joks. This also reveals that there is a great difference of views between the Overseas Koreans in China and the those in other countries. The gap of ratios between the Overseas Korean in China(95.4%) and

China nationality(71.9%), showed the sharp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the Overseas Koreans in China and the those in Korea.

27.3% of teens, 56.9% of twenties, 58.6% of thirties, 56.3% of forties, 71.7% of fifties, 58.8% of sixties said that the same rights should be given to all in-coming Chosun-joks, which showed steady increase by ages. 45.5% of teens, 34.5% of twenties, 34.5% of thirties, 32.5% of forties, 18.3% of fifties, 29.4% of over-sixties replied that the ajustment policies should be prepared in another way, which showed the inverse proportion by ages. Inspite of these differences, there is no doubt that they all support the Act should be equally enacted.

By immigrant generation, the first generation 53.3%, the 1.5 generation 44.8%, the second generation 70.2%, the third generation 60.4% said same rights should be given to all in-coming Chosun-joks.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of opinions that the Act should be equally enacted for all the Overseas Koreans around the world.

By education, middle school 86.6%, high school 59.6%, college 38.8%, graduate 42.9% said hat the same rights should be given to all in-coming Chosun-joks, and middle school 7.5%, high school 28.9%, college 46.9%, graduate 42.9% asked for another way to solve the mass influx. We could see that the highly educated people respectively asked the adjustment policies.

By sex, 66.1% women and 55.3% men supported to the 'same rights'.

(10) Equal Treatment to Foreigners

(Q 10) Some have the opinion that in the instance that the Overseas Koreans Act were enacted, with consideration to equal treatment,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ther foreigners would have to be improved.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Frequency	%	Valid%
Valid	Very Much	99	30.0	30.7
	Yes	68	20.6	21.1
	No	75	22.7	23.3
	Very Much	31	9.4	9.6
	Not Sure	49	14.8	15.2
	total	322	97.6	100.0
Missing	0	8	2.4	
Total		330	100.0	

Over half of the respondents(51.8%) agreed, but many disagreed(32.9%), or didn't know(15.2%). very much agree 30.7%, agree 21.8%, disagree 23.3%, disagree very much 9.6%, not sure 15.2%

By residency, Japan 89.3%, German 79.5%, America 67.2%, Korea 61.5%, China 5.7% agreed. It's remarkable that the rate of China is extremely low. It shows that the Overseas Korean Chinese in China don't give much attention to the equality of other foreigners. China 89.3% (very much 19.3%), Korea 15.6%(very much 7.3%), German 9.1%(very much 6.8%), America 6.6%(very much 3.3%), Japan 3.6%(very much 0%)

By nationality, Korea 78%, German 71.4%, America 64.7%, China 32% agreed. The striking rise of the residents in China here was due to the high rate(about 65%) of agreement of 'the Overseas Korean Chinese in Korea'. 94% of respondents who were residing in Korea had China nationalities. These people, witnessing the realities of the migrant workers' situation during their stay in Korea, have had the sense of solidarity with them.

By sex, age, immigrant generation, there couldn't be found any specific distinction.

By education, middle school 22.8%, high school 33.7%, college 68%, graduate 85.7% agreed. The rate of agreement increased with the level of education. .

(11) Right to Vote

(Q 11) What do you think about the opinion that Overseas Koreans must be guaranteed the right to vote and eligibility to run for office?

		Frequency	%	Valid%
Valid	Yes	221	67.0	69.5
	No	48	14.5	15.1
	Not Sure	49	14.8	15.4
	total	318	96.4	100.0
Missing	0	12	3.6	
Total		330	100.0	

69.5% agreed. not necessary 15.1%, don't know 15,4%.

By residency, China 98.9%, German 93.3%, Korea 59.1%, Japan 48.3%, America 32.8% agreed. The rate of China and German is high. The rate of disagreement - America 44.8%, Japan 24.1%, Korea 11.8%, German 6.7%, China 0%. Residents in America expressed more disagreements than agreements.

By nationality, German 86.4%, China 80.7%, Korea 42.9%, America 25.8% agreed. The difference of rates among countries was great. The rate of "not necessary" or "don't know" - America 74.2%(not necessary 38.7%), Korea 57.2%(not necessary 38.8%), China 19.4%(not necessary 13.1%) German 13.6%(not necessary 13.6%).

By age, 54.5% of teens, 56.1% of twenties, 68.3% of thirties, 71.8% of forties, 81.4% of fifties, 70.6% of sixties or more agreed. The elder were more likely to support to the voting rights than the younger. .

By immigrant generation, the first generation 48.8%, the 1.5 generation 43.2%, the second generation 80.0%, the third generation 66.7% agreed, showing a sharp divergence of rates between the second and the third generation.

By education, middle school 89.6%, high school 71.3%, college 37.5%, graduate 35.7% agreed. We could see that the older were more prudent in the voting rights. The rates of "not necessary" or "don't know" - graduate 64.3%(not necessary 25%), college 62.5%(not necessary 39.6%), high school 28.7%(not necessary 13.0%), middle school 10.5%(not necessary 4.5%).

By sex, there couldn't be found any specific distinction.

3. Analysis of the Survey (II)

○ 「Analysis of the Survey (II) shows the satisfaction degree among those who are applicants of the Act regarding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 This is a survey to the 37 who have visited Korea after the Overseas Korean Act was put into practice.(Question 12)

○ Of all the respondents, there were 14 American citizens, 5 German citizens, 18 Korean citizens(including Korean citizens in Japan.).

○ Because of the small sample size, we did not analyze this by nationality, age, immigrat generation, education, sex.

(1) Satisfaction Degree of Immigration Procedure.

(Q 13) Do you think the immigration procedure has been improved after the Overseas Korean Act has been enforced?

3 respondents out of 36(8.3%) said that it has improved or highly improved. However the respondents(91.7%) said that it was not improved(52.8%), or don't know(38.9%). There was no answers that it was worsened.

		Frequency	%	Valid%
Valid	highly improved	1	2.7	2.8
	improved	2	5.4	5.5
	not improved	19	51.4	52.8
	worsened	0	0	0
	not sure	14	37.8	38.9
	total	36	97.3	100.0
Missing	0	1	2.7	
Total		37	100.0	

(2) Satisfaction Degree of Domestic Employment and Health Insurance.

(Q 14) Do you think the procedure in employment or health insurance has been improved after the Overseas Korean Act has been enforced?

Only 2 out of 36(5.6%) answered that it has improved. However the other 32(94.4%) answered that there was no improvement(33.3%) or they didn't know(61.1%). There was no answer that said it worsened.

		Frequency	%	Valid%
Valid	highly improved	2	5.4	5.6
	improved	0	0	0
	not improved	12	32.4	33.3
	worsened	0	0	0
	not sure	22	59.5	61.1
	total	36	97.3	100.0
Missing	0	1	2.7	
Total		37	100.0	

(3) Satisfaction Degree of Domestic Residency Registration

(Q 15) Do you think residency registration has been improved after the Overseas Korean Act has been enforced?

1

Only 1 out of 36 respondents(2.8%) said that it was very convenient. 6(16.7%) didn't feel the improvement, 25(69.4%) didn't know and 4(11.1%) felt it very inconvenient.

		Frequency	%	Valid%
Valid	very convenient	1	2.7	2.8
	convenient	0	0	0
	not improved	6	16.2	16.7
	very inconvenient	4	10.8	11.1
	not sure	25	67.6	69.4
	total	36	97.3	100.0
Missing	0	1	2.7	
Total		37	100.0	

4. Overall Analysis

(1) Overall Analysis of the Survey (I)

While 67%, 60.3% answered Yes and No, respectively,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know about the fact that the Overseas Koreans Act (hereafter OKA) was legislated and enforced , the 60% or above of the respondents from the US and Germany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whether the OKA applied to themselves. This means that their actual degree of awareness was very low.

Upon the current OKA provision of the past nationality principle, 72.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it was unfair (unfair 17.2%, very unfair 55.1%), 86.4% of the them

answered that it was discriminatory (very discriminatory 63.7%, discriminatory 22.7%), and 83.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it should be substituted by the hereditary principle. However, the number of respondents with USA nationality or USA residency who answered "appropriate" or "not discriminatory" was more than that of respondents from other countries. This, once again, reminds us that this Act was made mainly for the Korean Americans.

On the question regarding China's opposition to the revision of this Act, 81.6% of the respondents gave the opinion that the OKA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all Overseas Koreans. 90.5% was opposed to the exclusion of Chosun-jok Chinese from the OKA, for the possibility of their mass influx. The substantial degree of respondents, however, 32.7% answered that there should be a control mechanism to prevent the mass influx. On the question of whether to allow the free entry of Chosun-Juk Koreans in Japan, 85.1% agreed.

51.8%, the greater numbers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foreigners' legal status and immigration rights should be improved together. Also, the substantial degree of respondents 32.9% opposed to it and 15.2% answered "not sure". It is found that Chosun-jok Chinese took a more exclusive posi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and immigration procedures of foreigners.

69.5%, the majority of them, agreed to the endowment of voting rights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to overseas Koreans, but this tendency is mainly shown on Korean Chinese and Korean Germans.

(2) Overall Analysis of the Survey (II)

This survey had a very small sample(36 people), but we could recognize that the Overseas Koreans who ever visited Korea were not satisfied with immigration procedures , domestic residency registration and specific privileges regarding health insurances and employment.

Especiall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more than half (52.8%~69.4%) answered that they didn't know about the OKA.

재외동포법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199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으로 표시함)의 서울시 조례안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재외동포법'의 서울시 조례안 제정시 중요한 자료로 쓰이며 본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Ⅰ. 다음은 '재외동포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법'이 제정되고, 시행(1999. 12. 3)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나누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던 자 및 그 직계가족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대다수의 재중동포 조선족, 구소련동포 고려인,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 및 일본국적 취득 재일동포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 과거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대다수 해외동포와 그 직계가족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3. 당신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4.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를 위와 같이 정의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 ② 적절한 편 ③ 부당한 편 ④ 매우 부당 ⑤ 잘 모르겠다.

5. 위와 같은 '재외동포법'의 동포규정이 '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차별적 ② 차별적인 편이다 ③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④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6.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이들도 재외동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을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던 자'에서 '한민족 혈통의 외국국적 소지자와 그 직계가족(혈통주의)'으로 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매우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7. 외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혈통주의적 재외동포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은 혈통주의에 따라 화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강대국의 횡포이지만 힘이 없으므로 할 수 없다.

②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모든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도록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③ 조선족동포의 유입은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이므로 설득력이 있다.
④ 중국도 화교지원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⑤ 기타

8. 재일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동포들은 조선적(무국적)으로 표기되어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잘 모르겠다

9. '재외동포법'이 재중동포에게도 적용될 경우, 재중동포 조선족들의 대거 유입이 우려되므로 재외동포법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조선족 동포들의 대거유입은 한국경제, 한중관계에 큰 문제이므로 당연하다.
② 조선족 동포들이 대거유입 되더라도 동포들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③ 법은 모든 동포들이 포함되도록 제정하되 법 외의 대거유입 조절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④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예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낫겠다.
⑤ 기타 ( )

10. '재외동포법'이 제정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인들의 출입국이나 법적 지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매우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12.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 선거권 /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12. '재외동포법' 시행(1999. 12. 3)이후에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II. '재외동포법' 제정 이후 방문 경험자에 한하여 답해주십시오

13. '재외동포법' 발효 이후 "출입국 절차"가 개선되었다고 느끼십니까?
① 확실히 개선되었다. ② 개선된 편이다. ③ 별로 개선된 바 없다. ④ 더 악화되었다.. ⑤ 잘 모르겠다.

14. '재외동포법' 발효 이후 '취업, 재산취득, 의료보장' 등이 개선되었다고 느끼십니까?
① 확실히 개선되었다. ② 개선된 편이다. ③ 별로 개선된 바 없다. ④ 더 악화되었다.
⑤ 잘 모르겠다.

15. '재외동포법' 제정 이후 새로 도입된 '거소신고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편리하다 ② 편리한 편 ③ 불편한 편 ④ 매우 불편 ⑤ 잘 모르겠다.

15-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II. 다음은 통계를 위한,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독일 ⑤ 러시아 ⑥ 조선적 ⑦ 대한민국 ⑧ 기타 ( )

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4. 귀하는 이주 몇 세대입니까?
① 1세 ② 1.5세 ③ 2세 ④ 3세 ⑤ 기타 ( )

5. 귀하의 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6. 귀하의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은?
① 5년이내 ② 10년이내 ③ 15년이내 ④ 20년이내 ⑤ 25년이내 ⑥ 기타( )년

7.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⑤ 기타 ( )

- 설문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전화 +82-2-708-4327 ■ 팩스 +82-2-708-4328
■ 웹사이트 www.kin.or.kr ■ 이메일 kin@kin.or.kr
■ 주소 (110-741)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5호

Questionnaire Concerning the "Overseas Korean Law"

Hello! Thank you for answering this questionnaire.
This questionnaire is in preparation for the Seoul municipal ordinance of the Law Regarding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Overseas Korean Law)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December of 1999. The results of these questions will be used as important data in the enactment of the Seoul municipal ordinance of the Overseas Korean Law and will not be used outside of this purpose.

I. The following are questions related to the Overseas Korean Law.

1. Are you aware of the fact that the Overseas Korean Law was enacted and has been in force (since December 3, 1999) in the Republic of Korea?
a. I am aware of this fact b. I am unaware

2. Are you aware of the fact that according to the Overseas Korean Law, Overseas Koreans are separated into Overseas Korean Citizens and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the latter term including those who once had ROK nationality and those who are family members of such a person and have acquired foreign nationality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and of the fact that Chosun-jok Koreans in China, Koryo-in Koreans in Russia, Chosun-juk Koreans in Japan with no nationality, Koreans in Japan who have acquired Japanese nationality, and others who previously emigrated to other countrie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government and did not acquire ROK nationality, which includes the great majority of overseas Korean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in fact exclud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law and its benefits?
a. I am aware of these facts b. I am unaware

3. Do you fall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Overseas Korean Law?
a. Yes b. No c. Im not sure

4. Do you think the passage of the Overseas Korean Law above is adequate for defining what an Overseas Korean is in a fair manner?
a. Very adequateb. Somewhat adequate c. Somewhat unfair d. Very unfair
e. Im not sure

5.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oint that the above definition of Koreans from the Overseas Korean Law discriminates against Overseas Koreans?
a. It is very discriminatory b. It is somewhat discriminatory c. It is not really

discriminator
d. It is not at all discriminatory e. Im not sure.

6.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oint that in order for those who emigrated from Kore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to be considered Overseas Koreans as well, the Overseas Korean Law must be amended in its application from those who held ROK nationality in the past to those possessing foreign nationality who are of Korean ethnicity and descent and those who are family members of such people (the doctrine of ethnicity)?
a. I very much agree b. I somewhat agree c. I somewhat disagree d. I very much disagree e. Im not sure

7.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ays that it is difficult to amend the law because China would be against an ROK Overseas Korean policy based on the ethnicity doctrine. Do you think this is reasonable?
(*China has adopted a policy that supports the ethnicity doctrine in defining Overseas Chinese.)
a. Nothing can be done because we are powerless against a powerful countrys tyranny.
b. Even if China is against it, the Overseas Korean Law must be amended to apply to all Overseas Koreans.
c. It is a persuasive point that the influx of Chosun-jok Koreans into both countries is a serious issue for all.
d. China must also discontinue its Overseas Chinese aid policy
e. Other ( )

8. Korean-Japanese who do not possess either ROK or Japanese nationality and are declared to be Chosun-juk (no nationality), are suffering under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Also, they are under restrictions when entering the ROK. What is your opinion on allowing Chosun-juk Korean-Japanese to enter the ROK?
a. I approve b. I disapprove c. Im not sure

9.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act that some people have the opinion that the Overseas Korean Law cannot be made to include Korean-Chinese because they are afraid that in the case that the Overseas Korean Law applied to Korean-Chinese as well, there would be a large scale influx of Chosun-jok Korean-Chinese?
a. It is reasonable because a great influx of Chosun-jok Korean-Chinese would be a large problem for the Korean economy and for Korea-China relations
b. Even if there is a large influx of Chosun-jok Korean-Chinese, uniform benefits must be granted to all Overseas Koreans
c. The law should include all overseas Koreans and apart from the law, there should be

a mechanism to control and regulate the large influx.
d. It would be better to do away with the Overseas Korean Law altogether and maintain the same system used in the past.
e. Other ( )

10. Some have the opinion that in the instance that the Overseas Korean Law were enacted, with consideration to balance,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ther foreigners would have to be improved.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a. I strongly agree b. I somewhat agree c. I somewhat disagree d. I strongly disagree
e. Im not sure

11. What do you think about the opinion that Overseas Koreans must be guaranteed the right to vote and eligibility to run for office?
a. It is necessary b. It is unnecessary c. Im not sure

12. Have you visited Korea after the Overseas Korean Law was put into effect (on December 3, 1999)?
a. Yes b. No

II. Only those who have had the experience of visiting Korea after the enactment of the Overseas Korean Law shoul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3. Do you feel that after the Overseas Korean Law went into effect the procedure for entering and leaving the country improved?
a. It definitely improved b. It somewhat improved c. No sign of improvement
d. It got worse e. Im not sure

14. Do you feel that there has been an improvement in the state of acquiring employment, purchasing property, and getting medical care, after the Overseas Korean Law went into effect?
a. It definitely improved b. It somewhat improved c. There was no sign of improvement
d. It got worse e. Im not sure

15. What do you think of the Institution of Residence Registration that was newly introduc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Overseas Korean Law?
a. It is very convenient b. It is somewhat convenient c. It is somewhat inconvenient
d. It is very inconvenient e. Im not sure

15-1. What is the reason for your answer?

III. The following are questions regarding personal data and are for statistical purposes

I. What is your nationality?
a. U.S.A. b. Japanc. Chinad. Germany e. Russia f. Chosun-juk 7. R.O.K.

2.What is your age range?
a. Teensb. Twenties c. Thirties d. Forties e. Fifties f. Sixties and over

3. What is your gender?
a. Female b. Male

4. What generation are you as an immigrant?
a. First generation b. One and a half generation c. Second generation d. Third generation e. Other ( )

5. Where is your current place of residence?

6.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at your current place of residence?
a. Less that 5 years b. Less that 10 years c. Less that 15 years d. Less than 20 yearse. Less that 25 years f. Other ( )

7. What is the extent of your academic experience?
a. Junior high school b. High school c. College d. Graduate school
e. Other ( )

- Thank you!!! -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
■ Tel +82-2-708-4327 ■ Fax. +82-2-708-4328
■ Web-site www.kin.or.kr ■ E-mail kin@kin.or.kr
■ Address (110-740) Rm. 905, Korean Ecumenical Bldg., 136-56, Yeonji-dong, Chongno-gu, Seoul

在外同胞法に關するアンケート

アンケートに答え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のアンケート調査は1999年の12月から施行されている、"在外同胞の出入國と國内の法的地位に關する法律"(以下、"在外同胞法"と表示)に關する、ソウル市の條例案を設けるためのものです。本アンケート結果は"在外同胞法"のソウル市條例案の制定時に重要な資料として利用され、それ以外の用途では一切使用いたしません。

I. 次の項目は"在外同胞法"に関する質問です。

1. 大韓民国で"在外同胞法"が制定、施行(1999. 12. 3)されている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ますか?
①知っている ② 知らない ( )

2. "在外同胞法"によると、在外同胞を在外国民と外国国籍同胞とに分けて、外国国籍の同胞を"大韓民国の国籍を持っていた者及びその直系家族で、外国国籍を取得した者のうち、大統領令が定めた者"と規定しています。この規定は、大多数の在中同胞(朝鮮族)、旧ソ連同胞(高麗人)、無国籍在日同胞(朝鮮籍)及び日本国籍を取得した在日同胞など、大韓民国政府が樹立する前に海外へと移住したり、過去に大韓民国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なかった海外の同胞とその直系家族を、法の適用対象から事実上除外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事実を知っていますか?
①知っている ② 知らない ( )

3. あなたは"在外同胞法"の適用対象に含まれていますか?
①はい ②いいえ ③わからない ( )

4. "在外同胞法"が在外同胞を上記のように定義していますが、適切だと思いますか?
①とても適切だ ②適切だ ③不当だ ④とても不当だ ⑤わからない ( )

5. 上記のような、"在外同胞法"の同胞に関する規定が"同胞を差別し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事に対してどの様に思いますか?
①とても差別的だ ②差別的だ ③差別的ではない ④とても差別的ではない ⑤わからない ( )

6. 大韓民国の樹立以前に海外へ出た人々も在外同胞として認められるように、"在外同胞法"の適用対象を"過去に大韓民国の国籍を所持していた者"から、"朝鮮民族の血統をもつ外国国籍の所有者とその直系家族(血統主義)"に改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指摘に対してどう考えますか?
①とても賛成だ ②賛成だ ③反対だ ④とても反対だ ⑤わからない ( )

7. 韓国の外務省によると、中国が大韓民国の血統主義的な在外同胞政策に反対するため、法の改定が難しいとのことです。外務省の主張は正当だと思いますか? (※中国は血統主義によって華僑に対する支援政策をとっています)
①強大国の横暴であるが力が無いので仕方がない
②中国に反対してでも、全ての海外同胞を対象とするように"在外同胞法"が改定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
③朝鮮族の同胞の流入は、両国において深刻な問題であるため説得力がある。
④中国も華僑支援政策を中断するべきだ
⑤その他 ( )
( )

8. 在外同胞のうち、大韓民国の国籍または日本国籍を取得しない在日同胞が朝鮮籍(無国籍)と表記され様々な差別を受け、大韓民国への入国も制限されています。朝鮮籍の同胞に対する大韓民国への入国を許可する事に対してどの様に考えますか?
①賛成 ②反対 ③わからない ( )

9. "在外同胞法"が在中国同胞にも適用される場合、多数の在中同胞(朝鮮族)の流入を憂慮して"在外同胞法"に含めてはならないという見解がありますが、これに対してどの様に考えますか?
①多数の朝鮮族同胞の流入は韓国経済、韓中関係における大きな問題であるため当然だ。
②多数の朝鮮族同胞が流入するとしても、同胞達に同じ条件を与えなくてはならない。
③法は全ての同胞が含まれるように制定するが、法以外に流入を調節する何らかの方法を模索しなくてはならない。
④"在外同胞法"を廃止して、法が制定される前の体制をそのまま維持するほうが良い。
⑤その他( )
( )

10. "在外同胞法"が制定される場合、形式上ほかの外国人の出入国や法的地位も改善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見解があります。どの様に考えますか?
①とても賛成だ ②賛成だ ③反対だ ④とても反対だ ⑤わからない ( )

11. 在外同胞に大韓民国の選挙権/被選挙権を保障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見解に対してどの様に考えますか?
①必要だ ②不要だ ③わからない ( )

12. "在外同胞法"の施行(1999. 12. 3)以降に韓国を訪問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①ある ②ない ( )

II. "在外同胞法"の制定以降に、韓国を訪問したことがある方だけ答えてください。

13. "在外同胞法"の発効以降、"出入国の手続き"が改善されたと思いますか? ( )
①確実に改善された ②改善された ③改善されていない ④もっと悪化した ⑤わからない

14. "在外同胞法"の発効以降. "就業、財産取得、医療保障"等が改善されたと思いますか?
①確実に改善された ②改善された ③改善されていない ④もっと悪化した ⑤わからない
( )
15. "在外同胞法"の制定以降に新しく導入された、"居所申告制度"に対してどの様に思いますか?
①とても便利だ ②便利だ ③不便だ ④とても不便だ ⑤わからない ( )

15-1. その理由は何ですか? ( )

III. 次は統計の為の基礎調査です。

1. あなたの国籍はどこですか?
①アメリカ ②日本 ③中国 ④ドイツ ⑤ロシア ⑥朝鮮(籍) ⑦大韓民国 ⑧その他( )
( )
2. あなたの年齢はどれですか?
①10代 ②20代 ③30代 ④40代 ⑤50代 ⑥60代 ( )

3. あなたの性別は何ですか?
①女 ②男 ( )

4. あなたは移住何世代ですか?
①1世代 ②1.5世代 ③2世代 ④3世代 ⑤その他( ) ( )

5. あなたの現在の居住地はどこですか?
( )
6. あなたが現在の居住地で居住した期間は?
① 5年以内 ② 10年以内 ③ 15年以内 ④ 20年以内 ⑤ 25年以内 ⑥その他 ( )年 ( )

7. あなたの最終学歴は?
① 中卒 ② 高卒 ③ 大卒 ④ 大学院卒 ⑤ その他 ( ) ( )

- アンケートへのご協力、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전화 +82-2-708-4327 ■ 팩스. +82-2-708-4328
■ 웹사이트 www.kin.or.kr ■ 이메일 kin@kin.or.kr
■ 주소 (110-741)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5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기타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각각 발급한다.
②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과 대한민국안의 거소 등을 기재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기타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④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훼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재외동포체류자격에 의한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대한민국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후 1연이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에 의하거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제14조(의료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이상 대한민국안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5조(연금)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공무원년금법 제64조제4항, 군인년금법 제33조제4항 또는 사립학교교원년금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국적상실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The Act Regarding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

Article 1 (Purpose) This Act purports to guarantee immigration of Overseas Korean in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legal status in the Repulid of Korea (hereafter ROK).

Article 2 (Definition) "Overseas Korean" in this Act shall refer to the persons who fall under the following provisos.

1. A citizen of the ROK who has acquired permanent residency in a foreign country or living in a foreign country with a purpose of permanent residency. (hereafter "Overseas Koreans")
2. Among people who previously had nationality of the ROK or family members of such a person currently having foreign nationality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hereafte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rticle 3 (Effect) This Act effects the legal status in the ROK and immigration into ROK by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have the Residency Qualification of Overseas Koreans, one of the Residency Qualifications pursuant to Article 10 of the Overseas Koreans and Immigration Management Act (hereafter "Residency Qualification of Overseas Koreans).

Article 4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shall have responsibility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Overseas Korean against unfair regulations and treatments in the ROK.

Article 5 (Residency Qualification of Overseas Koreans)

1)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grant the Residency Qualification of Overseas Koreans upon request from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wish to carry out activities in the ROK.

2)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not grant the Residency Qualification of Overseas Koreans to the applying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may harm the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public welfare, foreign relations and other the interests of the ROK.

3)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Relations and Trade when granting the Residency Qualification of Overseas Koreans pursuant to the provisos 1 and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order.

4) The conditions for applying the Residency Qualification of Overseas Koreans and the scope of activities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Article 6 (Residency Registration)

1) In order to have this Act effected, Overseas Koreans and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shall designate a residency within the ROK and file a residency registration to the Director or the Branch Director of the Immigration Office under jurisdiction when applicable.

2) The change of the residency registered pursuant to the proviso 1 must be reported to the Director or the Branch Director within 14 days.
3) The necessary clauses regarding the procedure of registration including the registration form, necessary documents, etc.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Article 7 (Issuing of the Residency Registration Card, etc.)
1) The Director or the Branch Director shall give a Residency Registration Number to Overseas Koreans 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have filed the Residency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6 and issue the Residency Registration Card for Overseas Koreans to Overseas Koreans and the Residency Registration Card f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to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2) The Residency Registration Card shall include the Residency Registration Number, Name, Sex, Date and Year of Birth, Nationality, Country of Permanent Residency, Address of Residency in the ROK, etc.
3) The Director or the Branch Director shall draft and preserve the Ledger of Residency Registration and other related docu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order.
4) In case of lose or damage to the Residency Registration Card, the person wishing to have the Card renew for reasons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shall request to the Director or the Branch Director.
5) The Director or the Branch Director may issue the Statement of Residency Registration as determined by Ministry of Justice order to a person who has in fact filed the Residency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6.
6) A person requesting the issue or renewal of the Residency Registration Card pursuant to the provisos 1 and 4 or the issue of the Statement of Residency Registration pursuant to proviso 5 shall pay applicable fees.

Article 8 (Returning the Card) In case when an Overseas Korean no longer need to possess the Residency Registration Card, he or she shall return the Card to the Director or the Branch Director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when such a case occurred.

Article 9 (Concerning the Citizens Registration, etc.) In various procedures and transaction prescribed by law, when the Citizens Registration Card, Short and Long Transcription of Citizens Registration, the Foreigners Registration Card, or the Statement of Foreigners Registration are required the Residency Registration Card or the Statement of Residency Registration shall be treated as an equivalence.

Article 10 (Immigration and Sojourning)
1) The period of sojourn granted with the Residency Qualification for Overseas Koreans shall be 2 years.
2) The Minister of Justice may approve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sojourn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to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wish to stay more than the period of sojourn prescribed by the proviso 1.
3) In case when an Overseas Korean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have filed the Residency Registration re-enters the country after exiting within the period of sojourn, he or she shall not be required to obtain the Re-Entry Permit pursuant to Article 30 of the Immigration Act.
4) An Overseas Korean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have registered his or her residency in the ROK or reported the change of residenc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filed for the Foreigners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32 of the Immigration Act and the Change of Residency pursuant to Article 31 of the same Act.
5) Employment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of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with the Residency Qualification shall be freely permitted within the scope not harming the social order or economic stability.

Article 11 (Real Estate Transaction, etc.)
1)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have registered residency in Korea shall have equal rights with citizens of the ROK in acquiring, holding, using, or disposing real estates within the ROK with exception to the case prescribed in Article 4 (2) (i) of the Foreigners' Land Act. A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s 4 (1), 5, and 6 of the Foreigners' Land Act must be filed.
2) In cases when an Overseas Korean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have registered residency in Korea registered a land in trustee's name before the Act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in Real Owner's Name came into effect or registers or disposes a real right of real estate requiring registration in real name pursuant to Articles 11 (1) and (2) of the Act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in Real Owner's Name within 1 year after the Act was enforced, the provision of Articles 12 (1) and (2) of the same Act shall not be applied.

Article 12 (Financial Transaction) In using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opening a savings accounts, application of interest rates, depositing and withdrawing money, etc. Overseas Korean who have registered residency in Korea shall have equal right with citizens of the ROK who are resident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and Transaction Act. An exception is made in cases of Article 18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Article 13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Overseas Koreans shall receive same treatments with that of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in applying Articles 15 and 17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n cases of exporting or making payment to foreign countries the method of payment prescribed in the following proviso 1.
1. Payments from sales or disposition received from the sales or land expropriation of domestic real estates owned prior to residing in a foreign country.
2. Methods of Payment paid or imported to the ROK from foreign countries

Article 14 (Health Insurance) When Overseas Koreans who have registered residency in Korea stay in the ROK more than 90 days, they could obta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ccording to provisions of the health insurance related laws.

Article 15 (Pension) Overseas Koreans who have lost Korean nationality due to obtaining foreign nationality shall receive pension regardless of provisions of Article 64 (4)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33 (4) of the Military Pension Act or Article 42 (1)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Act.

Article 16 (Compensation to People Merited by the State or Independent Fighters or their Families)

Overseas Koreans who have lost Korean nationality due to obtaining foreign nationality shall receive compensation pursuant to the Act regarding the Treatment and Support of People Merited by the State, etc. or the Act regarding the Treatment of Independent Fighters despite having lost Korean nationality.

Article 17 (Fines and Penalty)

1) A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 of Article 6 (2) shall be fined 2 million won or less in penalty.
2) A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 of Article 8 shall be fined 1 million won or less in penalty.
3) Fines pursuant to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and shall be levied and collected by the Director or the Branch Director.
4) A person who has a complaint against the fines pursuant to 1) and 2) has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fines to file the complaint to the Director or the Branch Director.
5) When a person who was fined pursuant to 3) and filed a complaint pursuant to 4), the Director or the Branch Director shall notify the court in jurisdiction without delay. The court in jurisdiction, upon receiving the notice, shall make judgement on the fines according to the Non-litigation Case Proceedings Act.
6) When fine is not paid without filing a complaint within the specified term prescribed in 4), the fine shall be collected in a similar manner of collecting unpaid taxes.

Supplementary Provision

This Act shall be in effect 3 months after its promulgation.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411호(1999년 11월 27일)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①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2.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출입국관리국장과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노동부·경찰청·중소기업청 및 국가정보원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함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7조(국내거소신고)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서 기재사항) ①재외국민이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고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영주권번호 및 그 취득일자
4. 국내거소
5. 본적지 또는 최종 주민등록지
6. 직업 및 가족사항
7. 병역관계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외국국적동포가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2. 국적 및 그 취득일자
3.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호적등본
3.사진(반명함판) 2장
4.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본
2.사진(반명함판) 2장
3.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제10조(국내거소신고원부의 작성 및 관리) ①재외동포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 사항

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①거소를 이전한 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이전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지체없이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받은 전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원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신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대장에,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때
2.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생년월일·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내거소신고증을 관련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①법 제8조에서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4.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5.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6.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②재외동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동거자·호주·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국항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내거소신고원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허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부동산 취득·보유)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령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무부령 제490호(1999년 12월 2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와 입증방법) ①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라 함은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2인 이상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국내거소신고원부 등의 관리)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자별로 국내거소신고자기록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원부와 각종허가 또는 통고처분 관련서류 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거소신고원부의 서식)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이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국내거소신고연도·국내거소신고증발급기관·식별번호 및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②국내거소신고번호는 1인 1번호로 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체계중 생년월일은 연월일을 각 2자리수로 표시하고, 성별구분번호는 남녀별 각 1자리수로 표시하되 남자는 7, 여자는 8로 표시하며 국내거소신고연도번호는 등록연도의 끝 2자리수로 표시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발급기관번호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4의 등록기관별로 구분한 2자리수로 표시하며, 식별번호는 2자리수로 표시하되 생년월일·성별구분번호·국내거소신고연도번호 및 국내거소신고증발급기관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국내거소신고대장의 국내거소신고증란에 그 사유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증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수수료) ①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발급 및 재발급 1만원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1통당) 1천원

②수수료는 해당수수료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nforcement Rule for the Act regarding the legal status and immigration of Overseas Koreans

Ministry of Justice Order No. 490 (December 2, 1999)

Article 1. (Purpose) This rule shall purport to stipulate the articles commissioned by the Act Regarding the Legal Status and Immigration of Overseas Koreans (hereafter "Act") and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Act" and necessary for their enforcements.

Article 2.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and Verification Methods)

1) A person according Article 3-2 of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Act" (hereafter "Order") saying "a person who have been confirmed through documentation to have Korean nationality" shall be a person who have registered at the overseas Korean consulates in the residing country o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author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pursuant to the Registration Act of Overseas Koreans.
2) In the case when a person who fall under the condition of Article 3-2 of the "Order" fails to verify such a condition in documents, the person shall submit letters of reference from 2 or more Overseas Koreans pursuant to Article 2-1 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pursuant to Article 5 who have been given the residential right of overseas Koreans.

Article 3 (Forms for the Residency Registration)

1) The Residency Registration for Overseas Koreans pursuant to Article 7, 1) of the "Order" shall require Form No. 1 attached separately.
2) The Residency Registration f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pursuant to Article 7, 1) of the "Order" shall require Form No. 2 attached separately.

Article 4 (Management of Registration documents, etc.)

The Director of the Immigration Office or the Branch Director of a Branch of the Immigr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sidencies of Overseas Koreans shall keep a Record of the Register of Residency in Korea for each register of residency in Korea and file and manage all related documents.

Article 5 (Form of the Register of Residency in Korea)

1) The Register of Residency in Korea for Overseas Koreans pursuant to Article 10, 1) of "the Order" shall be registered with Form No. 3 attached separately.
2) The Register of Residency in Korea f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ies pursuant to Article 10, 1) of "the Order" shall be registered with Form No. 4 attached separately.

Article 6 (Report of Address Change)

1) The Report of Address Change pursuant to Article 11, 1) of "the Order" shall be reported with the Form No. 5 attached separately.
2) In case of address change for Overseas Koreans who have registered his or her residency but changed the address after re-entry to Korea, the date of address change shall be the date he or she domiciled.

Article 7 (Forms for the Residency Registration Card in Korea, etc.)

1) A person required to register his or her residency in Korea pursuant to Article 12, 1) of "the Order" are indicated in Table 1.
2) The Residency Registration Card for Overseas Koreans pursuant to Article 12, 2) of "the Order" shall be applied with Form No. 6 attached separately.
3) The Residency Registration Card in Korea f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pursuant to Article 12, 3) of "the Order" shall be applied with Form No. 7 attached separately.

Article 8 (The Ledger of Residency Registration)

1) The Ledger of Residency Registration in Korea for Overseas Koreans pursuant to Article 12, 2) shall be filed with Form 8 attached separately.
2) The Ledger of Residency Registration in Korea f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pursuant to Article 12, 3) shall be filed with Form 9 attached separately.

Article 9 (The Numbering System of the Registration Number)

1) The Residency Registration Number pursuant to Article 12, 3) shall be 13 digit numbers composed of the year and the date of birth, sex, the reporting year, the issuing office, and the serial number.
2) The Registration Number shall be given to each person and cannot be used more than once.
3) The detailed composition of the number is indicated in Table 2.
4) In the detailed composition of the Registration Number, the month and day of birth shall be displayed with 2 digits each, sex with 1 digit, 7 for male and 8 for female, the reporting year with 2 digits showing the two end numbers, the issuing office with 2 digits according to the office code in Table 4 of Article 46 of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Immigration Act, and the serial number with 2 digits., In case the year and the date of birth, sex, the reporting year, the issuing office are all same numbers, the Registration Number shall be given in the order of issue.

Article 10 (Renewal of the Card)

1) In case of renewing the Card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Order", the Director and the Branch Director shall use the previous number and record the reason for the renewal in the Card section of the Ledger of Residency Registration.
2) The Renewal Application Form of the Card pursuant to Article 13, 2) of "the Order" shall be Form 10 attached separately.

Article 11 (Issuing the Statement of Residency Registration)

1) The Statement of Residency Registration pursuant to Article 7, 5) of the "Act" shall be issued by the Director or the Branch Director upon request from the said person or legal representative.
2) The StatementResidency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proviso 1 shall be issue with Form 11 attached separately.

Article 12 (Fees)

1) The fees for issuing of the Card pursuant to Article 7, 6) of the "Act" are as follows:
   1. The Card and Renewal 10,000 won

2. The Proof of Registration (1 copy) 1,000 won

2) The fees according to the schedule shall be paid through stamps.

Article 13 (Issuing and Collecting Fines)

1) The collection of fines pursuant to Article 18, 4) of "the Order" shall follow the rules the Order of Tax Collectors' Affairs. In this case, the Schedule of Fine shall indicate the methods and term of complaint.

2) The Letter of Receipt shall be Form 12 attached separately and the Ledger of Fine Issuing and Collection shall be filed with Form 13 attached separately.

Supplementary Provision

This Order shall start to be in effect on December 3, 199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 해설"

1. 일반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3. 국내거소신고
4. 부동산 거래
5. 금융 및 외국환 거래
6. 의료보험
7. 연금 및 유공자 보상금
8. 기타

1. 일반사항

1-1 재외동포법을 제정한 취지는

-지구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체류 및 모국에서의 활동제약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생활권을 광역화 국제화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국민들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 세계화를 촉진함.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체류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 및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킴.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및 납세의무 회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출입국과 체류 및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내활동에 있어서의 각종불편을 해소함.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하더라도 모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최대한 줄이고, 연금 등을 계속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국 정착에 장애가 없도록 함.

1-2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 및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가

-재외동포법은 그 입법 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및 납세의무 회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출입국과 체류 및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그 동안 제기되었던 재외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입법화한 것임.

-따라서 이 법만으로 재외동포들이 모든 점에서 내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아

니고, 이 법령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그 법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다른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는 것임

1-3 재외동포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는 바, 동 접은 이들에게 적용됨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즉,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및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취업, 혼인 등으로 인한 이주자)로서 아직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함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을 뜻함

1-4 재외동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란 무슨 의미인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함.(시행령 제2조 제2항)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람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최근에 거주국으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아직까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위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면 "영주할 복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임.

1-5 "외국국적 취득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란 무슨 의미인가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란 거주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과.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를 말함.

-"대한민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란 제일민단과 같이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재외국민 등록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한 기관.단체를 의미함.

1-6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았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우리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확인받았으나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재외공관에 관련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외국민등록등본 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상의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2인 이상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재외동포체류자격

2-1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무엇인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F-4비자)임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재외동포>라는 체류자격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조항도 개정되었음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체류자격임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또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및 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2-2 모든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3 <재외동포체류자격>사증발급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은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인이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관장이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함, 위조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운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승인요청을 함, 즉 이러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사증발급 여부를 판단함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체류자격변경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위 조항에 해당하는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함, 승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받아 체류자격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됨

2-4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신청시 첨부서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미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직계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어느 경우이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현재는 이러한 추가서류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나머지 서류만을 제출하면 됨, 향후 재외동포법을 시행하면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보충서류 등을 법무부지침에 규정할 예정임

2-5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국내에서의 활동범위는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l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

l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서의 취업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종사하는 행위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l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함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더라도 변호사.의사 등 국내법령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2-6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은 후 체류기간연장허가 기준은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제한

l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하지 아니함

l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

*재외동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타 법무부장관이<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3. 국내거소신고

3-1 <국내거소신고>란 무엇인가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구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즉,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

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임

3-2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는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규7 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줌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및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다음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l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통조항 : 금융거래, 의료보험
l 이국국적동포 : 부동산거래

3-3 <국내거소신고서> 기재사항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를 신고할 경우 구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게 됨
*재외국민
1) 신고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
2) 거주국내주소
3) 영주권번호 및 그 취득일자
4) 국내거소
5) 본적지 또는 최종주민등록지
6) 직업 및 가족사항
7) 병역관계
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외국국적동포
1) 위 제1,2,4,6항에 규정된 사항
2) 국적 및 그 취득일자
3)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4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의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재외국민의 경우
l 거주국의 영주권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l 호적등본
l 사진 2장 (35mm X 45mm)
l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l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사본
l 사진 2장
l 기타법무부장관이 위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3-5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국내거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겨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3-6 <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게 적용됨.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음
-따라서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체류심사과(503-7101)로 문의바람

3-7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언제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기만 하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외국국적동포도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동포법 제 10조 제4항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3-8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는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데 된 때>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함
l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l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l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貴국한 때
l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3-9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시기와 방법은
-재외동포의 국적이 변경된 때,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및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이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음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자.호주.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하여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음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시 출국항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거나 출국한 EO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시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3-10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 및 방법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란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재외동포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되거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함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임)

3-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란 무엇인가
-<국내거소사실증명>이란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발급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가능하고, 거소관할 사무소가 아닌 사무소,출장소 또는 분소(세종로,도심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수수료는 1통당 1천원임

4. 부동산 거래

4-1 외국국적동포는 국내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 제정 전에 외국국적동포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구역의 부동산 취득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음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보유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다음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는 하여야 함
l 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l 상속.경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l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국적동포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l 외국국적동포가 위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각종 신고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4-2 외국국적동포는 명의신탁에 놓은 국내 부동산을 실명으로 등기할 수 있는가
-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유예기간 경과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과거에 외국국적동포는 토지의 취득이나 계속보유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실명전환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음